

「2019 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지원업체 모집안내

부산광역시와 (재)부산경제진흥원에서는 부산지역 소공인·소기업을 대상으로 경영 컨설팅, 마케팅·판로개척, 혁신사업화지원, 근로환경개선 등을 연계 시행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영활동과 고용안정에 도움을 드리하고자 「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을 추진하오니, 아래 지원내용을 참고하시어 기한 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I 사업개요

- 사업목적 : 부산지역 소공인 업체에 혁신성장지원, 복지 및 근로환경개선 지원을 통한 고용상황 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지속 창출
- 사업기간 : 2019. 2. ~ 12.
- 신청기한 : 공고일로부터 4월 24일 18:00까지
- 지원대상 : 부산지역 제조 및 지식서비스업종 소공인, 소기업(20인 미만)
 - 부산지역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지식서비스업종 중 ICT, 플랫폼(O2O, 프랜차이즈 본사 등)을 운영하는 기업, 부산시 전략산업 업종 중 20인 미만 소기업 등
- ※ 지원제외 대상 : 유흥·향락업, 불건전 오락용품, 주류 중개·도매업 등 부적합 업종에 해당하는 업체, 국세 및 지방세 체납중인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가맹점 등 **【별첨1】** 참조
- 지원규모 : 35개 내외 업체
- 지원내용 : 지원금 범위 내 아래 필요분야 중 지원 (업체선택, 업체당 최대 1,000만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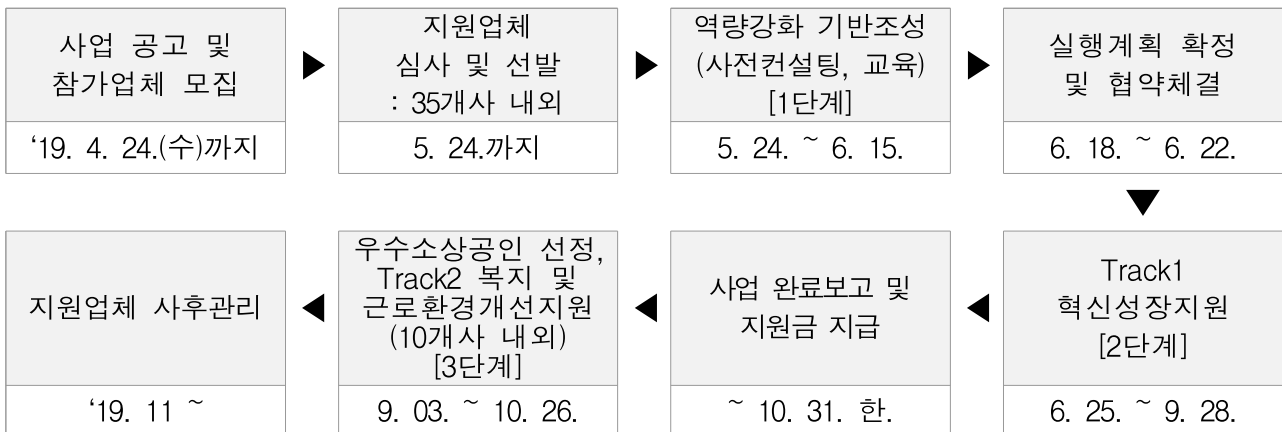
협업화 및 컨설팅(필수)	마케팅·판로개척(선택)	혁신사업화(선택)	복지 및 근로환경개선(선택)
- 그룹컨설팅 연 2회 - 전문가 컨설팅, 교류회 - 소공인 역량교육 (금융·투자, 제품개발, 마케팅, 혁신사례 등)	- 홈페이지, 어플개발 - 전시회, 박람회, 투자대회 - 제품·포장디자인 개선 - 온라인·오프라인 광고 - 온라인쇼핑몰 입점지원	- 시제품개발 지원 - 소프트웨어 구매, 렌탈 - 각종 인증 시험비용 - 상표권출원, 인증지원 (ISO-9001제외)	- 작업장 안전을 위한 노후 설비 및 비품교체 -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자 인센티브 지원 - 복지행사 및 건강검진

- 지원금지급 : 업체 부감 선 집행 완료 후 지원 (자부담 20%, VAT별도)
- 지원조건 : 기존 근로자 고용유지 및 신규고용 창출
 - ※ 사업성과 점검 및 완료시 4대보험 사업장가입자 명부 등 필요 증빙자료 제출
- 주최 : 부산광역시, 고용노동부 부산지방고용노동청
- 주관 : (재)부산경제진흥원

II 세부 지원내용

지원단계	세부항목	내용
역량강화 기반구축 (1단계)	역량강화교육	- 세무, 회계, 노무관리, 온라인마케팅 등 (5월중)
	사전컨설팅	- 전문가 현장방문 컨설팅 수행, 발전계획 수립 - 업체별 지원금 사용계획 설정
	전문 멘토링 (심층 컨설팅)	- 분야(세무,노무 등)별 전문가 방문 심층 컨설팅 - 업체당 최대 5회(1회당 20만원)
Track1 혁신성장지원 (2단계)	마케팅· 판로개척지원	- 온라인플랫폼(홈페이지 등), 모바일 어플개발지원 - 전시회, 박람회, 투자대회 참가지원 - 제품브랜드·이미지 개선 지원(제품·포장디자인 등) - 온라인 쇼핑몰(수출플랫폼 등) 입점지원
	혁신 사업화지원	- 시제품 개발비용 지원(금형비, 장비 렌탈비 지원) - ERP, SCM, CRM 소프트웨어 구매 및 렌탈비 지원 - 각종 인증을 위한 시험비용 지원 - 특허, 상표권 출원, KS등 인증 지원 (ISO-9001제외)
고용우수 소공인 선정 Track2 복지 및 근로환경개선지원 (3단계) ※ 신규고용 인원별 차등 지원	근로환경개선 지원	- 보안용 방범장치 설치 지원 - 작업장 안전을 위한 노후 설비 및 비품 교체 · 전기, 환기, 소방, 집진시설, 소방시설 등 - 사업장 인테리어, 직원 편의시설 및 화장실개보수 · 파티션 설치, 위생관련 시스템 설치 지원 등 ※ 생산설비 등 영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장비 구매불가
	근로자 복지비지원	- 고용안정을 위한 근로자 인센티브 및 복지포인트 ▶ 우수사원 포상: 문화상품권, 온누리상품권 1인당 20만원 이내 - 근로자 복지비 지원 ▶ 여가활동비: 역량강화 교육, 체육시설이용료, 취미 활동비, 도서구입비, 문화행사관람권 등 - 회사 복지행사 및 건강검진 지원 ▶ 단합대회, 워크숍, 단체무화행사, 근무자 종합건강 검진 지원, 근로자 상기고취를 위한 프로그램 지원

III 사업 추진 절차



※ 상기일정은 상황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IV 신청 및 접수

- 신청기간 : 사업공고일 ~ 4. 24.(수), 18:00 까지
- 신청방법 : e-mail 접수, 우편접수(접수 기간 내 도착분에 한함)
 - e-mail : top@bepa.kr
 - 우편 : (우)48547 부산광역시 남구 신선로 365 부산창업지원센터
지역 혁신형 소공인 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담당자 앞
- 제출서류

구분	제 출 서 류	비 고
소상공인 및 소기업 (20인미만)	1. 제출자료 체크리스트	
	2. 지원신청서 [신청서식1]	
	3. 사업계획서 [신청서식1]	
	4. 사업자등록증 사본	
	5.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6. 국세 완납 증명서	
	7. 지방세 완납 증명서	
	8.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상시근로자가 없는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공고일 이후 발급분
	9.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2017~18년도 자료)	창업 초기기업(1년이내)은 그 외 매출증빙자료

- 유의사항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 향후 결정사항은 개별통보하며, 제출상의 기재착오나 연락불능으로 인한 불이익은 일체 제출자의 책임임
- 문의 : 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 창업기반조성팀
T. 051-600-1867 홍영진 매니저

V 선정절차 및 평가방법

평가	1차 서면평가	2차 심층면접	3차 현장실사	최종 선정
대상	신청업체 전체	서면평가 통과업체	현장실사 필요업체	35개사
주요 내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채용 역량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채용 예정 인원, 월 매출수준, 근로조건 우대 조건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우대업종(별첨참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지원의 필요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영업지속력, 성장 가능성, 지원의 필요성 사업지원의 적정성, 기대효과 대표자 고용의지 및 역량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현황파악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사업장, 고용현황 (상시근로자 수 등), 사업분야 기타 서류기재사항 확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심층면접, 현장실사 결과 종합평가 최종 지원업체 선정
평가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신규 채용계획 및 신청서류 종합검토 우대조건 대상 가점 부여 	<ul style="list-style-type: none"> 대표자 심층면접 심사 면접을 통한 업체 배점 현장실사 대상업체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현장방문을 통한 결격사유 파악 등 결격여부 판단 후 선정 	<ul style="list-style-type: none"> 선정위원회

VI 사업설명회 개최

- 일 시 : '19. 3. 28(목), 14:00 ~
- 장 소 : 창업카페 부경대대연점 (부산 남구 용소로 45 부경대학교 대연캠퍼스)
- 문 의 : (재)부산경제진흥원 창업지원본부 051-600-1867

별첨1 2019년 지원대상 기준 및 우대조건

- 지원기준 (소기업, 소공인 기준)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부산시 소재 소공인 사업자
 - ▶ 상시 근로자 수 10명 미만
 - ※ 상시근로자는 대표자 제외 근로자 수
 -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2조에 따른 부산시 소재 도시형 소공인 사업자
 - 「중소기업 기본법 시행령」제 8조 1항 주된 업종별 평균 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사업자 ※별첨2 참조
- (우대조건: 5점) 4대보험 사업장 가입업체
- (우대업종: 5점) 부산시 5대 전략산업 관련 업종
 - ❖ 부산시 5대 전략산업
 - 해양산업 : 해양플랜트, 그린선박, 해양수산식품
 - 융합부품소재산업 : 기계, 자동차, 항공, 에너지부품, 신발섬유
 - 창조문화산업 : 영상, 콘텐츠, ICT, 디자인, 패션
 - 바이오헬스산업 : 항노화, 고령화친화기기, 의료서비스, 방사선의과학
 - 지식인프라산업 : 물류, MICE
- (우대업종: 3점) 관광 서비스 및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
 - 문화.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관광서비스업종의 소상공인(관광기념품 판매점 등) 및 소기업
 - 4차 산업혁명 관련 업종의 소상공인 및 소기업
 - ▶ 인공지능,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로봇공학, 3D프린팅, 헬스케어 관련업종
- 지원제외 대상
 - 제외업종 : 금융·보험업, 숙박업, 도박, 안마, 주점 등 사치 및 향락적 소비나 투기를 조장하는 업종 등
 - 대기업 운영 프랜차이즈 직영점 또는 가맹점
 -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자
 - 휴·폐업중인 사업자, 무점포 사업자
 - 국세, 지방세 체납 사업자
 - 타 지원사업에 동일항목으로 선정되어 지원받은 사업자

별첨2 주된 업종별 평균매출액등의 소기업 규모 기준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	분류기호	규모 기준	
1. 식료품 제조업	C10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	
2. 음료 제조업	C11		
3. 의복,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	C14		
4. 가죽, 가방 및 신발 제조업	C15		
5. 코크스,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	C19		
6.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	C20		
7.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	C21		
8.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	C23		
9. 1차 금속 제조업	C24		
10. 금속가공제품 제조업(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25		
11. 전자부품, 컴퓨터, 영상,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	C26		
12. 전기장비 제조업	C28		
13.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	C29		
14.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	C30		
15. 가구 제조업	C32		
16. 전기, 가스,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	D		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
17. 수도업	E36		
18. 농업,임업 및 어업	A		
19. 광업	B		
20. 담배 제조업	C12		
21. 섬유제품 제조업(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	C13		
22.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	C16		
23. 펄프,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	C17		
24.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	C18		
25. 고무제품,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	C22		
26. 의료, 정밀,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	C27		
27.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	C31		
28. 그 밖의 제품 제조업	C33		
29. 건설업	F		
30. 운수 및 창고업	H		
31. 금융 및 보험업	K	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	
32. 도매 및 소매업	G		
33. 정보통신업	J	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	
34. 수도, 하수 및 폐기물 처리, 원료재생업(수도업은 제외한다)	E(E36 제외)		
35. 부동산업	L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6. 전문·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M		
37. 사업시설관리,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	N	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	
38. 예술,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	R		
39.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	C34		
40. 숙박 및 음식점업	I		
41. 교육 서비스업	P		
42.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	Q		
43. 수리(修理)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	S		